# 경북혁신Ab8,Ab9블록 천년나무 2,3단지(10년 공공임대주택) 상시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급대상 : 경북김천혁신도시 내(김천시 율곡동 일원) Ab8블록(2단지), Ab9블록(3단지) 총 1,271세대 중 미분양세대(현시점 244세대)

# 유주택자도 계약가능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4.29(수)**입니다.
- 이 주택의 신청일은 2020.05.12(화)10:00 ~ 2020.07.31(금) 17:00 까지 입니다.
- 이 공고문은 2013.11.12(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순번추첨공급공고(2015.5.14), 선착순 공급공고(2016.10.24, 2017.06.29, 2018.05.24, 2019.04.26, 2019.07.04, 2019.09.03, 2020.01.17) 이후 미공급 주택에 대한 상시 동호 지정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 본 공고문 공고 이후에는 본 공고문의 일정에 따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이며, 이 주택의 최초입주지정기간은 2015.06.10~07.24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금회 본 공고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 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합니다.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 함은,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계약방법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 미숙지·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계약불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분
  -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청약통장유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기능
  - ※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 불가

#### 입주자 선정방법

- 동호지정 및 계약신청 : 블록별, 평형별, 주택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계약 순번이 결정됨
  - ※ '20.05.12(화) 10:00 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또는 계약 시작 시간에 계약 장소에 기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하며, 순번을 배정 받은 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다음 순번으로 순연되며,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날 신청접수자에게 공급됩니다.(지정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 순번별로 희망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계약체결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
  - ※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확인 및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유선 상 동호 지정 불가)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계약 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일시 및 장소

신청일	계 약 장 소	계 약 체 결
• 2020.05.12(화)10:00 ~	•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 신청개시일 이후 매주 월~금요일
2020.07.31(금) 17:0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10:00 ~ 17:00(공휴일 제외, 12:00 ~ 13:00 제외)

# 계약시 구비서류 및 계약방법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계약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시	<ul>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li> <li>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날인)</li> <li>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li> <li>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4.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동호지정이나 계약이 불가합니다.
-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합니다.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П

# 공급대상

## 공급내역

						세대당 주택	택면적(m*)				공급	네대수			
공급 유형	블록 (단지)	7 FII	주택형		공급면적		그 밖의	공 <del>용면</del> 적	- IIO IIII I	공유			최고	입주	
		(단지)	형 (단지)	구역8	구백	8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계)	공유 대지 지분 (㎡)	건설호수	금회공급
	Ab-8 (2단지)	Ab-8블록 소계 783 <u>92</u>													
		59형	Α	59.95	23.3668	83.3168	4.3072	29.4887	117.1127	47	305	47	21		
		298	В	59.99	23.3824	83.3724	4.3100	29.5084	117.1908	47	126	15	21		
1014		74형	(A)	74.90	29.1939	104.0939	5.3813	36.8424	146.3176	58	184	24	19		
10년 공공		84형	(A)	84.98	33.1228	118.1028	6.1055	41.8006	166.0089	66	168	6	21	계약체결일	
임대						Ab-9블	록 소계				488	152		부터	
		59 <b>8</b>	Α	59.95	22.2002	82.1502	5.2066	29.7403	117.0971	45	114	25	21	45일 이내	
	Ab-9 (3단지)	298	В	59.99	22.2151	82.2051	5.2101	29.7601	117.1753	45	60	14	21		
	(32 1)	74형	Α	74.90	27.7364	102.6364	6.5050	37.1568	146.2982	57	275	109	21		
		748	В	74.98	27.7661	102.7461	6.5119	37.1965	146.4545	57	39	4	21		

- ※ 모든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 금회 모집 세대호수는 금회 계약일 이전 계약 및 해약 또는 금회 계약일 이후 계약 및 해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m I\hspace{-.1em}I\hspace{-.1em}I}$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총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기존 무주택자 조건으로 입주하신 분들은 무주택 조건 유지)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블록	주택형	합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원)	
		합계	계약시	입주시		
	59형(A,B)	31,000,000	3,100,000	27,900,000	416,000	
Ab-8   (2단지)	74형(A)	35,800,000	3,580,000	32,220,000	550,000	
,	84형(A)	46,000,000	4,600,000	41,400,000	580,000	
Ab-9	59형(A,B)	31,000,000	3,100,000	27,900,000	416,000	
( 3단지 )	74형(A,B)	35,800,000	3,580,000	32,220,000	550,000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입주 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열쇠를 교부받기 전에 납부하여야 함(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전환보증금 안내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완납 이후 100만원 단위로만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동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대보증금 증액(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 ※ 공고일 현재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요율은 5%, 감액 전환이율 3%임

(단위: 원)

		최초 임대조건		초	l대 전환내역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		
블록	주택형	임대보증금(A)	임대료(B)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D)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A+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B-D)	
	59형(A,B)	31,000,000	416,000	59,000,000	245,840	90,000,000	170,160	
Ab-8 (2단지)	74형(A)	35,800,000	550,000	79,000,000	329,170	114,800,000	220,830	
	84형(A)	46,000,000	580,000	83,000,000	345,840	129,000,000	234,160	
Ab-9	59형(A,B)	31,000,000	416,000	59,000,000	245,840	90,000,000	170,160	
( 3단지 )	74형(A,B)	35,800,000	550,000	79,000,000	329,170	114,800,000	220,830	

#### 분양전환 기준

구분	적용기준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다만, '18.5.24.(목)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하며,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에 의거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059.9500A	119,291	12,704	106,587
Ab-8	059.9900B	120,073	12,712	107,361
AD-0	074.9000A	148,897	15,872	133,025
	084.9800A	167,689	18,008	149,681
	059.9500A	117,450	12,360	105,090
Ab-9	059.9900B	118,151	12,369	105,782
AD-9	074.9000A	146,637	15,443	131,194
	074.9800B	147,384	15,459	131,925

# IV

#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신청시 유의사항

- 계약신청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와 세대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 1세대 1명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계약, 1인 중복계약, 부부 각각 계약하여 중복 계약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해제)
- 선착순 계약이므로 계약 희망주택이 먼저 계약체결될 수 있으며 공가 수는 계속 변경되니 계약체결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미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 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법 제6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정보 조회]에서 수정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부의 책임입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단,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11.12)를 준용함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내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계약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 안내



2020.04.29

